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유만희, 강석주, 김길영,
김원중, 김지향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박영한,
서호연, 신복자, 윤기섭,
이병윤, 최유희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출산가정 등의 양육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,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돌봄 지원 사업에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.(안 제6조제1항 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아이돌보미 사업”을 “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돌봄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근거한 <u>아이돌보미 사업</u></p> <p>5. ~ 8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(돌봄 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 <u>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</u>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 번호

2023101300000044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유만희 의원

담당 : 오히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24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(돌봄 지원 사업)제1항제4호의 규정을 변경·신설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 비용이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 비용

나. 전제

-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자료(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사업) 준용
-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시 사업대상은 2021년도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연 826가구를 전제
-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~100%(중위소득별 차등)을 전제
-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% 비용부담을 전제
-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4~2028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4년~2028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자료를 준용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3,611,210천원(연평균 722,242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4)	2차년도 (2025)	3차년도 (2026)	4차년도 (2027)	5차년도 (2028)	합계
구분	-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입	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비용 지원 (안 제6조제1항제4호)	722,242	722,242	722,242	722,242	722,242	3,611,210
	소계 (b)	722,242	722,242	722,242	722,242	722,242	3,611,210
□ 총 비용 (b-a)		722,242	722,242	722,242	722,242	722,242	3,611,210

주: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자료 준용

4. 덧붙이는 의견 : 둘째 이상 출생아 수 변동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 증감이 있을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안 제6조(돌봄 지원 사업)제1항제4호 규정을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≙ 3,611,210천원

- 산출방식 = $\sum_{i=1}^5$ (연간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비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4년~2028년)

나. 연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비 ≙ 722,242천원

○ 산출방식

= '23년 평균 지원단가¹⁾ × 50시간²⁾ × 5개월³⁾ × 지원가구수⁴⁾ × 105%⁵⁾ × 50%⁶⁾
 = 6,662 × 50 × 5 × 826 × 105% × 50%
 = 722,242천원

(단위 : 명, 천원)

합계	'21년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(A)	지원대상 수 (B=A×5%)	'24년 소요예산(안) ²⁾		
			총계	시비(50%)	구비(50%)
	16,528	826	1,444,482	722,242	722,242

※ 서울시 50% 및 자치구 50% 비용부담을 전제

※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~100%(중위소득별 차등) 전제

- (본인부담금 지원율) 가형 100%, 나형 90%, 다형 90%, 라형 90%

-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별(가~라형) 차등 지원 취지 고려

자료 :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

1) 6,662원/시간

2) '22년 가구당 월평균 이용시간

3)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내 총 5개월 지원

4) 21년도 서울시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× 5%

5) 평균 지원단가 5% 인상 간주, '21년→'22년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률 5%

6) 시 및 자치구 50%씩 부담